

2008년부터 달라지는 환경행정

금년부터 국제기준(GHS)에 따른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제가 시행이 되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되고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종전에는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을 지정폐기물만을 전산입력 토록 하였으나, 2008년 8월부터는 사업장일반폐기물까지 전산입력 대상이 확대된다.

폐수 배출허용기준 강화, 폐기물 수출·입 신고제도 시행 등 2008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하였다.

〈편집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 계 부 서
1	수렵동물 확인표지 부착	·수렵자가 포획한 야생 동물을 신고하면 수렵장설정자가 포획야생동물에 부착	·수렵자가 수렵즉시 수렵한 야생동물에 확인표지를 직접부착 ·수렵설정자는 포획실적을 관리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완료 (2007. 12. 4 공포)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 02-2110-2746
2	인쇄 및 각종 기록 매체 제조(복제) 시설 대기배출 시설 추가	〈신 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합계용적이 1㎡ 이상인 인쇄·건조시설(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그라비아 인쇄 시설과 이 시설과 연계되어 유기용제류를 사용하는 코팅시설만 해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2007. 12 법제처 심사중	환경부대기관리과 ☎ 02-2110-6790
	특정대기 유해물질 추가	〈신 규〉	·특정대기유해물질 10개 항목 추가관리 -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10개 항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2 (2008. 1. 1 시행)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수도권 일부 지역만 지원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부 (안산, 시흥))	·지역 확대 추진(수도권의 경우 서울을 포함하여 전지역 지원)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 사업 업무 처리 지침 (2008. 1. 1)	
3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포름알데 히드 기준강화	1,000㎡이상인 국공립보 육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관리	·'08년부터 430㎡이상인 국공립보육시설,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로 확대 시행단,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은 '10년까지는 860㎡이상인 시설에 한함)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008. 1. 1) ※ 2007. 12. 18 국무회의 심의완료	환경부 생활환경과 ☎ 02-2110-6815
		포름알데히드 유지기준 120μg/m³	·포름알데히드 유지기준을 120μg/m³에서 100μg/m³으로 강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2008. 1. 1) ※2007. 12 법제처 심사중	
4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 의무화	〈신 규〉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주유소의 주유시설에 유증기 회수설비 단계별 설치 의무화 ·신규주유소는 2008년 1월 1일부터, 기존 주유소는 2012년 말까지 판매량에 따라 5단계로 설치의무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07. 12. 공포예정)	환경부 대기관리과 ☎ 02-2110-6788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 계 부 서																																		
5	동일건물내 사업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신설	(신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건물내 소음다량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신규사업장은 2008. 7. 1 부터, 기존사업장은 2010. 1. 1부터 생활소음 규제기준 적용 * 대상지역·시간대별로 차등하여 생활 소음 규제기준(40~55dB(A))을 정함 * 적용대상 사업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의 9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2008. 7. 1시행) 	환경부 생활환경과 ☎ 02-2110-6814																																		
	건설기계 소음도표시 의무제 시행	건설기계 소음도표시를 권고제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발생건설기계를 제작·수입하는 경우 소음도표시를 권고하던 기존제도를 의무제로 전환 * 적용대상 건설기계 : 굴삭기, 다짐기계, 로우더, 발전기, 브레이커, 공기압축기, 콘크리트 절단기, 천공기, 향타 및 향발기의 9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진동규제법 (2008. 1. 1 시행) 																																			
6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확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공항의 건설,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관광단지의 개발, 산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시설의 설치,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 •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제철 시설, 섬유염색시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코르크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제차 금속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도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의 5개 개발사업 추가 •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금속 광업, 비금속 광물 광업, 음·식료품 제조업, 전기·가스 및 증기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의 7개 사업장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07. 12 시행)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02-2110-6836																																		
7	수질원격 감시체계 (TMS) 제도 시행	(신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처리용량 10,000㎥ 이상), 폐수종말처리시설(전년도 1일 평균 방류량 700㎥ 이상 또는 1일 처리시설 용량 10,000㎥ 이상), 1종사업장·공동방지사설(1일 처리용량 2,000㎥ 이상)은 법정 기한까지 수질 TMS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11. 30 시행)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 ☎ 02-2110-6853																																		
8	폐수배출 허용기준 강화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항 목 (mg/L)</th> <th colspan="2">적용지역</th> </tr> <tr> <th>청정지역</th> <th>기타지역</th> </tr> </thead> <tbody> <tr> <td>비 소</td> <td>0.1</td> <td>0.5</td> </tr> <tr> <td>납</td> <td>0.2</td> <td>1</td> </tr> <tr> <td>도금염소 총질소</td> <td>30</td> <td>120</td> </tr> </tbody> </table>	항 목 (mg/L)	적용지역		청정지역	기타지역	비 소	0.1	0.5	납	0.2	1	도금염소 총질소	30	120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항 목 (mg/L)</th> <th colspan="2">적용지역</th> </tr> <tr> <th>청정지역</th> <th>기타지역</th> </tr> </thead> <tbody> <tr> <td>비 소</td> <td>0.05</td> <td>0.25</td> </tr> <tr> <td>납</td> <td>0.1</td> <td>0.5</td> </tr> <tr> <td>도금염소 총질소</td> <td>30</td> <td>60</td> </tr> <tr> <td>벤젠</td> <td>0.01</td> <td>0.1</td> </tr> <tr> <td>디클로로메탄</td> <td>0.02</td> <td>0.2</td> </tr> </tbody> </table>	항 목 (mg/L)	적용지역		청정지역	기타지역	비 소	0.05	0.25	납	0.1	0.5	도금염소 총질소	30	60	벤젠	0.01	0.1	디클로로메탄	0.02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8. 1. 1시행)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 ☎ 02-2110-6848
항 목 (mg/L)	적용지역																																						
	청정지역	기타지역																																					
비 소	0.1	0.5																																					
납	0.2	1																																					
도금염소 총질소	30	120																																					
항 목 (mg/L)	적용지역																																						
	청정지역	기타지역																																					
비 소	0.05	0.25																																					
납	0.1	0.5																																					
도금염소 총질소	30	60																																					
벤젠	0.01	0.1																																					
디클로로메탄	0.02	0.2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 계 부 서
9	오염된 공 공수역에서 물놀이 등 행위제한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호소 등이 오염되어 수영, 물놀이, 물을 마시거나 취사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수생물을 잡아먹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하천·호소 등에서 그 행위를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에 따른 조치를 함, 특히, 대장균이 500(개체수/100ml) 이상인 경우 수영 등 물놀이를 제한하고, 어패류 체내 총 수은(Hg)이 0.3(mg/Kg)이상인 경우 어패류 등의 섭취를 제한하게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2007. 12 시행) 	환경부 수질정책과 ☎ 02-2110-6824
10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 통합·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 공한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손괴자부담금을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손괴자부담금도 넓은 의미에서 원인자부담금에 포함되므로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하여 부과·징수도록 함(수도법 제71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수도법 제6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법 (2008. 1. 4 시행) 	환경부 수도정책과 ☎ 02-2110-6877
11	폐기물 부담금제도 개선·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꺾판매개(수입가) 0.27% 담배 : 20개비당 7원 1회용기저귀 : 개당 1.2원 부동액 : 0 당 30원 살충제 및 유독물 : 개당 6~16원 화장품 유리병:개당 1~4.5원 일반플라스틱 : 합성수지 투입kg당7.6원 건축용플라스틱 : 합성수지투입kg당3.8원 부과대상 : 중간·최종제품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5종 부과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 : 합성수지 투입량 - 수입 : 수입액의 0.7% 부담금 면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자 : 연간 매출액 10억 이하 - 수입업자 : 미화 9천불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꺾 : 판매개(수입가) 1.8% 담배 : 20개비당 7원 1회용기저귀 : 개당 5.5원 부동액 : 0 당 189.8원 살충제 및 유독물 : 개당 24.9~84.3원 화장품 유리병 : 2007년부터 EPR대상 일반플라스틱 : 합성수지투입kg당150원 건축용플라스틱 : 합성수지투입kg당75원 ※2008~2009년에는 실적리비의 20%, 2010~2011년에는 60%, 2012년 이후에는 100%로 인상됩니다. 부과대상 : 최종제품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31종 부과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 : 종전과 동일 - 수입 : 합성수지 투입량 부담금 면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자 : 연간 매출액 10억 이하 및 사용량 10톤 이하 - 수입업자 : 미화 9천불 미만 및 수입량이 100kg이하 ※ 부담금대상 사업자도 면제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 3. 21 개정, 2008. 1. 1 시행)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2-2110-6920
		<신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자 스스로 또는 사업자 단체를 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폐기물 부담금면제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부담금의 현재가치를 동일하게 유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 계 부 서
12	폐기물 수출입 신고 제도 시행	(신 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입 허가대상 품목 외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 신고제 도입 수입폐기물의 자가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의 위탁처리 의무화 수입폐기물의 국내 운반·처리시 전자인계·인수서 작성 의무화 수입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것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제24조의3 (2007. 8. 3개정, 2008. 8. 4 시행)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02-2110-6920
13	폐기물적법 처리시스템 전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자만이 적법 처리시스템에 처리상황을 전산입력하였음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인계·인수시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서 및 사업장 일반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자도 (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대신 적법처리시스템에 전산 입력도록 확대하였음 폐기물을 운반중에 휴대하여야 서류를 폐기물(간이)인계서에서 전산 입력한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을 휴대하도록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관리법 (2008. 8. 4 시행) 	환경부 산입폐기물과 ☎ 02-2110-6936
14	전기·전자제품 자동차의 재활용 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전기·전자제품의 해당 재활용목표를 및 매년 전기·전자제품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의무 부여 	(사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규제대상 유해물질 종류 및 사용제한기준 재질 종류의 단순화,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의 사용확대 등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조로 제조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해당 재활용목표를 부여 매년 전기·전자제품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의무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2008. 1. 1 시행) ※사전관리 규정은 2008. 7. 1일 시행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2-2110-6953
15	알칼리망 건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전 종량제봉투에 배출되어 매립되던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를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및 니켈수소전지에 대해 분리수거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 1. 1 시행)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02-2110-6958

기 타

국제기준(GHS)에 따른 새로운 화학물질 분류·표시제 시행

〈환경부 환경정책실 화학물질안전과 ☎ 02-2110-7953〉

2007년 11월 16일 GHS 도입을 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2008년 7월 부터 국제기준(GHS)에 따른 유독물의 분류 및 표시가 시행된다.

- 환경부는 표시의 일괄 교체 등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단일물질인 유독물은 2011년 6월까지, 혼합물질인 유독물은 2013년 6월까지 종전 규정에 의한 표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시행 이후 새로 지정되는 단일물질인 유독물은 곧바로 적용하여야 한다.